

‘귀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‘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’ 계약 시 납부 해야하는 인지세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 아파트 분양 계약 당일 전자수입인지(종이문서용)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가산세를 부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’

■ 인지세 안내

-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, 이점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.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※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 : [분양계약서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- 납부방법 :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온라인 :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매 시 공동인증서 필요 [계좌이체/카드결제] 가능
- 오프라인 : 우체국(우편취급국 구매불가), 은행에서 신분증 지참 후 결제(현금납부만 가능)
- 전자수입인지는 대리 구매 가능하며, 제출한 신분증의 이름/생년월일이 기재됨

■ 가산세 개정사항(2021.01.01부터 적용) ※(관련법령)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-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- ④
- 구매 : 납부정보입력
 - 용도 : 인지세 납부
 -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 - 금액 : 150,000원
 - 건수 : 1건

✓ **확인 후 결제**

⑤ 출력

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-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.
- 분양권 전매계약서 역시 “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”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간 서명/날인을 한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매시 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체결 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명의변경 시 증여계약서 작성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하단에 자료실(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)에서 확인하시거나 대표번호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